

『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 변경에 따라,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정비하여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, 활성화시키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」에서 「구미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」로 변경,
- 상위법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「경상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」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과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였음(안 제1조)

○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범위 신설(안 제2조)

- 상하수도시설, 조경시설, 근로자 체육시설, 안전시설, 민방위시설, 수방시설, 유수지(遊水池) 시설, 공공복지후생 시설, 그 밖에 관리기관이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○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치 기준, 구성,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개정(안 제5조, 7조)

- 협의회 설치 가능한 농공단지 기준 신설
- 농공단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, 입주기업체수 10개 이상
- 협의회 회원구성 기준 변경
-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 ⇒ 입주기업체 70% 이상이거나
가동 중인 입주기업체 90% 이상
- 협의회 일반회원(입주기업체, 지원기관), 특별회원(일반회원 외)으로 구성
-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신설
- 협의회는 매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정기총회 개최,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
- 협의회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,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○ 농공단지 관리보조 범위 변경(안 제12조)

- 예산 및 재정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⇒ 예산 및 재정적립금의 범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,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범위 신설과,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치 기준, 구성,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개정, 농공단지 관리보조 범위 변경 등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